

8. 연구윤리위원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가톨릭꽃동네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7.1. 자구수정)(2021.6.22. 자구수정)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 교원 및 본교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거나 그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교무입학처장, 기획관리처장, 산학협력단장과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입학처장이 된다. (2019.2.8.개정)

②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연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내 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진실성 검증 원칙)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총장은 본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등을 지원받은 과제로서 다른 연구기관의 구성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연구지원기관에게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진실성 검증 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방법) 제보자는 구술·서면 및 기타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진실성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제12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

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3항의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본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원 수는 5인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을 1인 이상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④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본조사위원회는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체적인 지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판정)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를 연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위원회는 심의 후 결정으로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서면으로 지체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판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연구위원회는 본교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장 제보자·피조사자 및 피감사자의 보호 등

제17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연구관련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가 연구관련 부정행위의 제보를 이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등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진실성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8조(피조사자 또는 피감사자의 권리 보호) ① 연구윤리 및 본조사위원회는 연구관련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 또는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 또는 피감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 및 본조사위원회는 검증 또는 조사결과 연구관련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또는 감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피조사자는 연구관련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전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의무) ① 제보·조사·감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직원은 조사 또는 감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1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